



의료보험GUIDE

(XIV)

의료보험 진료비 산정에 따른 참고 사례등을 계속적으로 수록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보호 제도

지역의료보험의 자격관리 업무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료보호제도를 안내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보호제도의 목적

의료보호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활 무능력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베푸는 공적부조 형태의 의료보장제도로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료보호대상자

가. 구분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 2종 및 의료부조 대상자로 구분되며, 그 구체적 대상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90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종별	대 상	책정인원(명)
1종	○생활보호자중 거택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인간문화재, 월남귀순자, 국가유공자, 이주민 및 성병감염자	680,250
2종	○생활보호자중 자활보호자	1,780,572
3종	○자활보호 대상자와 유사자	1,059,366

나. 대상자 책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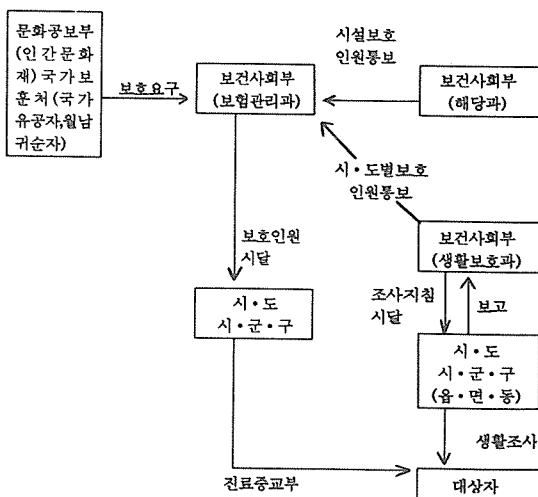
의료보호대상자의 책정은 전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세대별로 소득, 재산등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책정하게 되며, 그 기준은 매년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시달한다.

다. 대상자 책정절차

1) 보호기관

의료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2) 책정과정



3) 진료증의 발급

의료보호는 세대단위로 책정, 보호하므로 세대당 1명의 진료증 발급.

- 1종(성병감염자 제외); 황색
- 2종; 녹색
- 의료부조; 청색

대상자 책정은 연도별로 실시하므로 진료증 유효기간은 1.1-12.31임.

단, 이재민은 구호종료시까지, 추가 책정자는 연도말까지임.

3. 진료비 부담방법

진료비의 부담은 1종, 2종 및 의료부조대상자 사이에 차등을 두고 있다.

1종 대상자는 외래, 입원 모두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며, 2종 대상자는 외래진료비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입원진료비의 경우는 국가와 본인이 분담하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은 국가에서 대불하여준 후 무이자로 1년에서 3년에 걸쳐 분할상환토록 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의타심 배제 및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의료부조대상자는 생계유지는 가능하나, 질병에 이환되면 의료비의 전액부담이 어려운 계층이므로 일정비율로 정하여 국가에서 의료비를 부조하고 있다.

(의료보호 종별 본인부담률)

구 분	1차진료	2차진료				비 고
		일반진료		HD또는CAPD환자		
		대도시	기타지역	대도시	기타지역	
1종 (황색)	전액기금부담	좌동	좌동	좌동	좌동	
2종 (녹색)	전액기금부담	40%	20%	20%	20%	대불가능
3종 (부조)	총진료비의 2/3본인부담	50%	40%	40%	40%	

주1) 2차 진료라함은 1차 진료기관에서의 2차 진료건을 포함한 2차 진료기관건을 말함.

2) 대도시라함은 구(區)가 설치된 도시를 말함.

3) 본인부담금이 대도시의 경우 60,000원, 기타지역의 경우 40,000원을 초과시 대불가능.

4. 의료보호 급여

가. 급여범위

1) 급여내용

- 원칙적으로 모든 질병에 대한
- 진료

-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급부
- 의료시설에의 수용
- 간호
-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2) 급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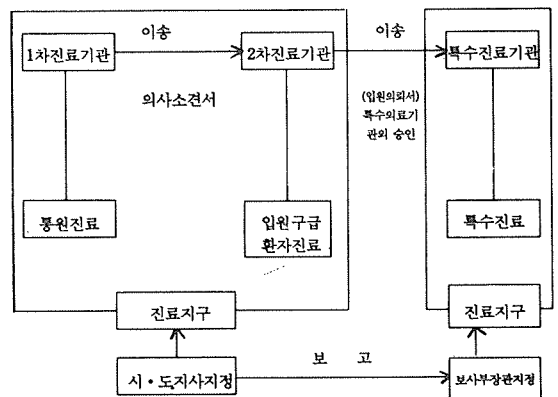
- 입원진료 기간은 2주일 이내가 원칙
-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계속 입원진료

3) 급여에서 제외되는 경우

- 타법령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특진
- 상급병실 사용차액
- 보조기, 의수족, 의치, 의안, 안경, 보청기
- 각종진단서 및 제증명서 발급
- 전산화 단층촬영 및 판독, 초음파 검사, 레이저 또는 초음파에 의한 체외충격 쇄석술
-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기준상의 비급여 대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등에 의하여 가해자가 있어 진료비 보상이 가능한 경우
- 정상분만

5. 의료보호 진료체계 및 진료내용

○ 진료전달 체계



- 1차 진료기관이 행하는 의료보호의 내용은
- 간단한 외과적 처치와 기타 통원진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서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질병의 치료
- 질병상태, 이송거리 및 시간등으로 이송을 하여

서는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초래될 경우의 긴급 입원수술

-제2차 진료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에 대한 진료등

○ 2차 진료기관이 행하는 의료보호의 내용은

-입원, 수술을 필요로하는 진료

-합병증등으로 인하여 입원을 필요로하는 중증

환자의 진료

-구급 환자에 대한 진료

-기타 1차 진료기관에서 행할 수 없는 처치및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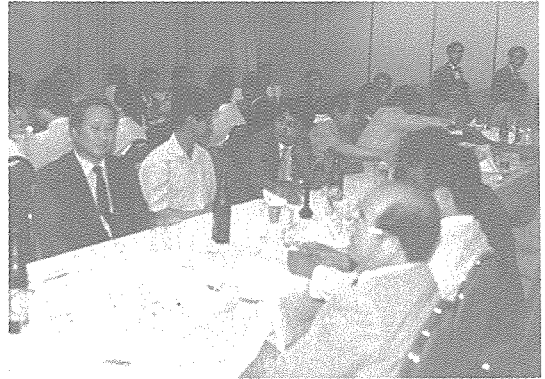
○ 다만, 구급환자, 성병감염자, 제활을 위한 입원 수술이 필요한 환자등 긴급하고 특수한 사정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대한치재협회 연석간담회개최

대한치재협회(회장 김덕준)는 지난 6월 19일 뉴서울 호텔에서 비회원사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덕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업계상호 협조하에 힘을 합쳐 치과계의 발전을 도모하자』고 강조하며 비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 송규천 총무이사는 협회의 임원진을 일일이 소개하고 『회원의 권익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된 정관이 보사부의 인가를 얻기까지 애로가 많았다』고 토로하며 현집행부의 사업계획과 운영방안등을 밝혔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1. 치과기자재 수입절차의 간소화
2.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
3. 치협과 공동보조하에 치과약품 취급, 판매 법안개정
4. 업계의 자율지도권 협회 이관 추진
5. 회원명부제작배포



6. 동호인회의 활성화 등을 밝혔다.

또 협회차원의 종합학술대회 개최시 치과기자재전시는 치재협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비회원의 입회를 적극유도키위해 가입절차등을 대폭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상호간에 자유스럽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3시간동안 진행 되었다.

CHOI'S DENTAL LAB

崔鍾煥 치과기공소

서울·종로구 승인동 1081
923-6671 · 923-2998